C - 83 - 2013

무응력상태가 되도록 가조립을 하여야 한다.

- (6) 가조립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점을 정하여야 하며, 이 기준점을 근거로 하여 교량의 솟음, 비틀림, 각 격점의 위치, 저판의 중심간 길이 높이 등의 허용차를 검측하여야 한다.
- (7) 가조립검사 시 시간과 기온을 기록하여 현장설치시 참고하여야 한다.
- (8) 가조립 해체는 가조립의 역순으로 하여야 하며, 변형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9) 화염과 불꽃(Spark)을 이용한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숙련된 자
 - (나) 소화설비가 작업지역 근처에 있어야 하고 언제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상태를 유지
 - (다) 산소와 아세틸렌 호스 정리정돈 및 연료원의 방호조치
 - (라) 불티, 불꽃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방지 방염포 설치
 - (마) 전기배선 등의 작업은 전기담당자가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
- (10) 강형부재의 조립완료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휨 및 솟음 계측
 - (나) 이음부 구멍의 정도
 - (다) 이음 부재사이의 표면간격
 - (라) 각 항목별 오차 측정 및 정밀도 기준비교
- (11) 강형부재의 인양 및 하역작업시에는 와이어로프를 2줄걸이로 인양 및 하역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2) 강형부재 적치불량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재하역 전 하역장소의 평탄성을 확인하고 받침목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3) 강형부재의 인양 및 하역작업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